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Categorization of Civil and Military Yangban Official Posts in Late Joseon

저자 (Authors)	이강욱 Lee, Kang-Wook
출처 (Source)	한국문화 , (89), 2020.3, 473-512 (40 pages) Han'guk Munhwa : Korean Culture , (89), 2020.3, 473-512 (40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Publish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1963
APA Style	이강욱 (2020).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한국문화, (89), 473-512.
이용정보 (Accessed)	성균관대학교 115.145.3.*** 2020/04/20 03:0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이강욱*

1. 머리말
2. 實職과 散職의 관계
 - 1) 實職
 - 2) 散職
3. 正職과 遞兒職의 관계
 - 1) 正職
 - 2) 遞兒職
4. 加設職과 權設職의 관계
 - 1) 加設職
 - 2) 權設職
5. 맺음말

1. 머리말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법전에서는 관직을 東班職과 西班職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동반직은 東班衙門에 설치되어 있던 관직을 가리키고, 서반직은 西班衙門에 설치되어 있던 관직을 가리켰다. 이러한 분류는 吏批와 兵批가 관장 하던 조선시대 인사행정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비에서는 동반직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고, 병비에서는 서반직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동반직과 서반직은 각각 文散階와 武散階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관직, 雜職階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관직, 土官職階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관직으로 대별하였다. 그중 문

*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사료번역자문위원.

산계와 무산계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동반직과 서반직은 해당 관직이 속해 있는 아문이 京衙門이나 外衙門이나에 따라 다시 京官職과 外官職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는 해당 관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조선시대의 관직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正職, 實職, 軍職, 兼職, 散職, 雜職, 遞兒職, 加設職, 權設職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법전에서는 일정한 자격의 기준을 정할 때 그러한 관직의 성격에 따라 정하기도 하였다.

①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서 實職 2품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3대를 追贈한다.¹⁾

②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서 實職 정2품 이상인 사람에게는 諡號를 내려준다.²⁾

①은 宗親 및 文官·武官 중에서 3대를 追贈해 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實職 2품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②는 宗親 및 文官·武官이 사망한 경우에 나라에서 諡號를 내려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實職 정2품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때의 實職은 東西 兩班의 관직 중 특정함 범주의 관직을 가리키는 의미로,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①의 ‘實職 2품 이상’과 ②의 ‘實職 정2품 이상’이 가리키는 대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동안 조선전기의 관직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우선 이성무는 『조선초기 양반연구』에서 조선전기의 관직을 職事가 있는 實職과 職事가 없는 散職으로 나누고, 實職을 祿官과 無祿官으로 나눈 뒤 祿官 안에 正職과 遞兒職을 포함시켰다.³⁾ 그리고 이와 같이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경국대전』에 규정된 실직을 동반직·서반직 및 경관직·외관직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

1) 『經國大典』 「吏典」 追贈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

2) 『經國大典』 「吏典」 贈諡 “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 贈諡。”

3) 이성무는 조선전기의 관직을 職事가 있는지의 여부로 實職과 散職으로 나눈 뒤 “實職에는 국가로부터 녹봉을 지급받는 祿官과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는 無祿官이 있었으며 녹관 중에도 일반적인 正職과 매 都目마다 교체되는 遞兒職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성무, 1985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 124-125면.

시 녹관·무록관 및 정직·체아직으로 나누어 숫자를 통계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⁴⁾ 이성무의 이러한 분류 및 통계는 조선전기 관직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이후 관직과 관련된 어휘의 설명은 대부분 이성무의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⁵⁾

조선전기의 관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한충희는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에서 조선전기의 관직을 본직의 여부에 따라 正職과 兼職, 職事의 유무에 따라 實職과 虛職, 녹봉의 지급 유무에 따라 祿職과 無祿職 등으로 분류하였다.⁶⁾ 한충희는 正職을 本職으로 보고 兼職을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고, 實職의 상대적인 개념을 散職이라 하지 않고 虛職이라 하였으며, 兼職을 祿官이 아닌 無祿職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관직체계를 도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도표에서 정직과 체아직은 祿職으로, 검직과 무록관은 無祿職으로 분류하고, 이들 녹직과 무록직을 모두 실직에 포함시켰다. 실직 안에 정직·체아직·검직·무록관을 포함시킨 것은 이성무의 분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성무와 한충희의 분류에 따른다면, ①과 ②의 實職에는 正職은 물론 遞兒職인 軍職, 無祿職인 兼職과 無祿官도 모두 포함된다. 영조와 정조 때에 각각 편찬된 『續大典』과 『大典通編』에서도 ①과 ②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상세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續大典』에서는 耆老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文臣 정2품 實職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였고, 『大典通編』에서는 文官·武官·蔭官으로서 實職을 역임한 사람이 지방에서 사망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이 觀察使 및 吏曹·兵曹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⁷⁾ 이

4) 위의 책, 125-131면.

5) 이재룡, 1984 『朝鮮初期의 遞兒職과 軍役』,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면; 최정환,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研究』, 경북대학교 출판부, 272-275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조선왕조실록사전』에서는 관직과 관련된 어휘 해설에 있어서 대부분 이성무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6) 한충희, 2008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48-66면.

7) 『續大典』 「吏典」 耆老所 “國初, 命文臣正二品實職年七十以上許入, 蔭武不預焉。”; 『大典通編』 「吏典」 政案 “文武蔭曾經實職人員在鄉身故, 地方官報觀察使, 侍從以上, 則啓聞, 餘, 報吏、兵曹。”

처럼 조선후기의 법전에 나오는 實職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法典과 史料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편찬된 법전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사료에서는 實職과 軍職, 實職과 兼職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직 분류를 조선후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관직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직 분류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직 분류 중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職事가 있는지 없음을 기준으로 모든 관직을 實職과 散職으로 대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實職을 正職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고 실직 안에 정직은 물론 兼職과 軍職 및 無祿官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⁸⁾ 세 번째는 녹봉의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正職과 遞兒職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의 3가지를 검토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관직 관련 어휘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법전과 사료에 제시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실직과 산직, 정직과 체아직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조선후기의 법전에는 수록되어 있는 加設職과 權設職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뒤에야 조선후기 양반의 관직을 엄밀히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實職과 散職의 관계, 正職과 遞兒職의 관계, 加設職과 權設職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생각이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의 법전으로는 『속대전』과 『대전통편』, 관찬사료로는 『승정원일기』를 주로 활용하려고 한다. 시기로는 『속대전』과 『대전통편』 및 『典律通補』 등의 법전이 편찬된 영조와 정조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그리고

8) 이성무, 앞의 책, 125-135면. 이성무는 實職의 숫자를 통계하면서 체아직을 포함시켰는데, 체아직에는 軍職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무는 ‘〈表 20〉 京外東西班正職祿官數表’에서 正職의 祿官 숫자 안에 兼官도 포함시켰고, 그 뒤에서는 정직의 녹관 중에서 檢관을 제외한 숫자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관직 관련 어휘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선전기의 실록 및 조선후기의 便攷類 등도 함께 활용하려고 한다.

2. 實職과 散職의 관계

1) 實職

조선시대의 법전과 사료에 보이는 實職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 실직은 散官 또는 散階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산관과 산계는 資級, 특히 文散階와 武散階의 자급을 가리켰다.⁹⁾ 산관 또는 산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실직은 자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관직까지 맡게 된 경우에 그 관직을 가리켰다.

① 관원의 서열에 따른 좌석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관원이 소속된 衙門에서는 관원들의 직무에 따라 배정하고, 본래 소속된 아문 이외에서는 散官을 따라 배정하되 산관만 받은 사람은 그 품계에 해당하는 實職의 말석에 배정한다.¹⁰⁾

② 승정원이 아뢰었다.

“『경국대전』 「吏典」 薦擧 조항에, ‘해마다 봄의 첫 달에 東班 3품 이상과 西班 3품 이상은 각각 守令과 萬戶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되, 모두 3명을 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道의 監司들이 올린 薦擧單子를 보니, 당상관인 郡守와 僉使 및 당하관인 虞候가 모두 다 천거하였습니다. 이조에 물어보니 ‘이와 같이 격식을 위반한 단자는 전부터 국왕으로부터 啓下를 받았더라도 시행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법전 안에서 3품이라고 한 것은 實職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지 資級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닌데, 여러 道의 감사들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단자를 거두어서 올려 보냈으니 매우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격식을 위반한 단자를 도로 내려 보내고 여러 道의 감사들은 모두 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¹⁾

9) 이성무는 散官을 散階 및 品階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 위의 책, 116면. 『典律通補』 「兵典」 京官格式 “遄兒 祿母越階【不授守職。】, 兒授下階【如應授正九職者階從九, 則降授從九之類。】, 仕滿, 則遷階去官散階【『經』 ○ 無實職, 只有散階。】”

10) 『經國大典』 「禮典」 京外官會坐 “凡座次, 本衙門, 從職事, 司外, 從散官, 只受散官者, 坐實職本品之末。”

①의 사례는 관원의 좌석을 서열에 따라 배치할 때의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해당 관원이 소속된 아문에서는 각각 직무에 따라 맡는 관직이 있으므로 그 관직의 서열에 따라 배정하였다. 그러나 소속 아문을 벗어나서 다른 아문의 관원과 함께 모일 경우에는 산관을 따라 배정하였다. 다만 산관만 받고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급에 해당하는 실직을 맡고 있는 관원들의 끝자리에 앉았다. 이때의 실직은 자급과 함께 받은 관직을 가리켰다.

②의 사례는 법전의 규정에 나오는 3품이 실직을 가리키는 것인지 자급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해마다 연초에 守令과 邊將으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책임이 있는 동반과 서반의 3품이란 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실직도 자급과 함께 받은 관직을 가리켰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실직은 자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급과 함께 받은 관직을 가리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직은 兼職이 아닌 本職을 가리켰다. 겸직은 본직과는 별도로 겸임하는 관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직으로 녹봉을 받았고 겸직으로는 녹봉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겸직은 실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祭酒·贊善·進善·司業·諭善·勸讀은 實職이 있으면 兼職으로 삼고 실직이 없으면 실직으로 삼는다.¹²⁾

④ 解由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實職에 제수할 후보자로 뽑아 올릴 수 없으나, 兼職에 제수할 후보자로 뽑아 올리는 것은 구애받지 않는다.¹³⁾

⑤ 鄭民始가 아뢰었다.

11)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2월 2일 “政院啓曰:‘大典薦舉 條, 『每年春孟月, 東班<二→三>品以上, 西班<二→三>品以上, 各薦堪爲守令、萬戶者, 並毋過三人。』而今觀諸道監司薦舉單子, 則堂上郡守、僉使及堂下虞候, 並皆爲之。問于本曹, 則『如此違格單子, 則自前雖已啓下, 而不爲施行。』云。法典中三品, 指實職而言, 非指謂資級, 而諸道監司之不爲致察, 朦然收捧上送, 事甚不當。違格單子, 還爲下送, 諸道監司, 並推考, 何如?’”

12) 『大典通編』「吏典, 京官職 “祭酒、贊善、進善、司業、諭善、勸讀, 有實職, 則爲兼銜; 無實職, 則爲實職。”

13) 『大典通編』「吏典, 解由 “解由未出人, 實職不得擬, 兼職則勿拘。”

“檢書官은 兼職인데다가 녹봉도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검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本職으로 녹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직을 체차하게 되면 소속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없는 검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규장각에서 草記를 올려 보고하고 軍職을 부여하여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¹⁴⁾

③은 실직과 겸직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世孫講書院은 『속대전』이 간행된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속대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속대전』에 추가할 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吏典補」에 종4품 아문으로 실려 있는데, 左翊善·右翊善·左贊讀·右贊讀 등 4명의 관원을 두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세손강서원의 관원을 더 늘리고 겸직이던 左翊善과 左贊讀은 실직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실직은 겸직과 구별되었으며, 本職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祭酒·贊善·進善·司業·諭善·勸讀에 임명된 관원이 다른 실직을 맡고 있으면 해당 관직은 겸직으로 삼고 다른 실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해당 관직을 실직으로 삼도록 한 것을 통해서도 실직은 겸직이 아닌 본직임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관직을 상황에 따라 실직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겸직으로 인정하기도 한 제도는 규장각과 홍문관의 관직에도 적용되었다.¹⁵⁾

④도 실직과 겸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解由란 관직에서 물러난 관원이 재임 기간에 관장하고 있던 물품 등을 후임에게 이상 없이 인계하였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解由를 발급받지 못하면 다른 관직에 제수될 수가 없었다. 다만 실적이 아닌 겸직에 제수하는 것은 해유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직과 겸직에 차이를 두었다. 본직에 비해 겸직에 제수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여 관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실직을 본직으로 보아 겸직과 구별한 사례는 조선후기의 사료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¹⁶⁾

⑤는 실직이 녹봉을 받는 본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검서관은 겸직

14) 『승정원일기』 정조 5년 2월 18일.

15) 『大典會通』 「吏典」京官職 弘文館 “副提學、典翰、有實職爲兼銜、無實職爲實職。”；『大典通編』 「吏典」京官職 奎章閣 “直閣、以曾經玉署人、待教、以翰圈、注薦、說書通望人、本閣圈點、移文本曹擬授、有實職爲兼銜、無實職爲實職。”

16) 『승정원일기』 인조 3년 2월 2일； 정조 20년 3월 12일.

으로서 녹봉을 받을 수 없는 자리이고, 검서관과는 별도로 받은 본직으로 녹봉을 받았다. 그에 따라 鄭民始는 검서관이 본직인 다른 실직이 없으면 실직을 대신하여 군직을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실직은 祿職이자 本職의 성격을 가지지만 겸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직은 본직으로 녹봉을 받는 祿職이었으며, 녹봉을 받지 않는 無祿官은 실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록관이란 의금부의 參下都事, 각 관사의 提舉·提檢·別坐·別提·別檢, 師傅·教傳·教官, 兼引儀와 假引儀, 守直官·守奉官·守衛官 등 녹봉을 받지 않는 관직으로, 이들 무록관은 360일을 근무하면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관직으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졌다.¹⁷⁾ 녹봉을 받지 않는 겸직과 무록관은 모두 無祿職으로, 본직이자 녹직인 실직과 구별되었다.

⑥ 각 科의 녹봉은 實職을 기준으로 삼아 사계절의 첫 달마다 나누어준다.¹⁸⁾

⑦ 軍職을 부여받은 관원이 實職에 옮겨 제수되었으나 미처 녹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軍職遞兒를 부여하도록 허용한다.¹⁹⁾

⑥은 실직이 관원의 녹봉을 지급하는 기준이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실직은 녹봉을 받는 관직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직이 없으면 녹봉도 없고 실직이 있으면 녹봉도 있는 것이 본래 국가의 변치 않는 법이다.’라고 하였다.²⁰⁾ 다만 선전관의 경우처럼 실직인데도 선전관 자체로는 녹봉을 받지 못하고 軍職의 遞兒祿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²¹⁾

⑦은 軍職에서 實職으로 이동한 관원이 녹봉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규정이

17) 『經國大典』「吏典」京官職 “無祿官【義禁府堂下官及提舉、提檢、別坐、別提、別檢等。】，仕滿三百六十而敘.”；『典律通補』「吏典」褒貶 “無祿官【『經』○ 師傅、教傳、教官、參下都事、別檢、監役、兼·假引儀、守直·守奉·守衛官。『經』『補』】及參外官居中，前十朔仕日，勿計。”

18) 『經國大典』「戶典」祿科 “各科祿，從實職，四孟朔頒賜。”

19) 『續大典』「戶典」祿科 “軍職移拜實職未及受祿之員，許付軍職遞兒。”

20)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9월 5일.

21) 『續大典』「兵典」番次都目 宣傳官武兼 “宣傳官、武兼合七十一員，爲正職，猶受遞兒祿：文兼，則入於原遞兒。”

다. 實職은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관직인데도 불구하고 군직에서 실직으로 이동한 뒤에 녹봉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변통으로 軍職遞兒를 부여하여 녹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넷째, 실직은 實官 또는 實銜이라고도 불렀으며, 假官 또는 假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가관 또는 가함은 임시직을 가리키고 실직은 정규직을 가리켰다.

⑧ 假監役은 근무 일수를 따지지 않고 제수된 차례에 따라 實官으로 승진시키며, 假官으로 근무한 일수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900일을 채우면 6품으로 올려준다.²²⁾

⑨ 敦諭하거나 傳諭하기 위해 지방으로 나갈 때 實注書와 兼春秋는 당시 實職을 맡고 있기 때문에 下直肅拜를 하고 나가지만, 假注書는 실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직숙배를 하지 않는다.²³⁾

⑧은 假監役을 가관으로 부른 사례이다. 監役은 국가의 공사를 감독하는 繕工監의 종9품 관직으로, 실관인 實監役과 가관인 假監役이 있었다. 가감역으로 근무하다가 실감역의 자리가 비면 가감역을 실감역으로 승진시켰고, 나중에 가감역과 실감역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계산해서 900일을 채우면 6품으로 올려주었다. 이때의 가감역은 임시직이지만 정규직인 실감역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通禮院의 假引儀가 있었다. 가인의는 종9품의 통례원 관직으로, 근무 일수를 따지지 않고 제수된 순서대로 兼引儀으로 승진되었고, 30개월을 근무하면 6품으로 승진되었다.²⁴⁾

⑨는 承政院의 注書를 실관과 가관으로 구별한 사례이다. 실관은 관직명 앞에 ‘實’자를 붙였고 가관은 ‘假’자를 붙여 구별하였다. 實注書와 假注書, 實承旨와

22) 『續大典』 「吏典」 京官職 繕工監 “假監役, 從除授次第, 不計仕陞實官, 通計假官仕滿九百, 陞六品。”

23) 『銀臺便攷』 「吏房攷」 敦諭 “凡敦諭及傳諭出去外方時, 實注書及兼春秋方帶實職, 故下直肅拜, 而假注書, 則非實職, 不爲下直。”

24) 『續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通禮院 “假引儀, 從除授次第, 不計仕陞兼引儀, 仕滿三十朔陞六品。”

假承旨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가관은 실관이 근무할 수 없거나 숫자가 부족할 경우에 차출하였다가 실관이 다시 근무를 하게 되거나 임무를 마치면 체차되었다.²⁵⁾

다섯째, 실직은 실제의 직무가 있는 관직을 가리켰다. 資級도 있고 職名이 있더라도 실제의 직무가 없는 虛職 또는 影職은 실직에 포함되지 않았다.²⁶⁾ 軍職의 경우에는 자급과 직명이 있고 녹봉도 받는 관직이지만, 그 자체로는 실제의 직무가 없기 때문에 虛職 또는 影職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실직은 ‘실제로 직무를 행하는 관직[實行職事]’이라고 할 수 있다.

⑩ 實職이나 軍職이나 따질 것 없이 당하관이 말미를 받지도 않고 제 맘대로 시골로 내려간 경우에는 의금부에 내려 推考한다.²⁷⁾

⑪ 일반적으로 疏章을 入啓한 뒤에 돌려주라는 명이 있으면, 소장에 대한 批答이 있거나 없거나 따질 것 없이 원래의 소장을 내주고 베껴서 바치게 한다. 【소장을 바친 관원이 實職이면 해당 曹의 書吏가 소장을 베껴서 바치고, 軍職이면 본인이 직접 써서 바치라.】라고 하교하였다.²⁸⁾

⑩과 ⑪의 사례는 모두 실직과 군직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하관이 말미를 받지도 않고 제 맘대로 시골로 내려간 경우에는 실직이나 군직이나 막론하고 의금부에 내려 推考하도록 한 것을 통해 실직과 군직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왕이 신하의 소장을 돌려주라고 명한 경우에는 소장을 베껴서 바치게 하되, 소장을 바친 관원이 실직이면 해당 曹

25) 『續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承政院 “注書有故，則假注書差出。”；『銀臺便攷』 「通攷」 注書 “上、下注書皆不行公，則假官差出時，上假注書簡問於上注書擬望。”；『銀臺條例』 「禮攷」 奉審 “因廟啓畿伯停巡時，各陵寢，以道內秩高守令，假承旨差下替行。【成送有旨。○ 曾經承旨人無假衙差下。○ 北道道臣有故，道內陵寢奉審替行同。】”

26) 影職은 직함만 있고 직무는 없는 관직을 가리켰다. 『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影職，有職衙而無職事者。”

27) 『續大典』 「吏典」 給假 “堂下官，勿論實職、軍職，不待受由任意下鄉者，禁推。”

28)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凡疏章入啓後，有還給之命，則無論批答有無，原疏出給，使之騰納。【‘實職，曹吏書納；軍職，親書。事，下教。’】”

의 書吏가, 軍직이면 본인이 직접 써서 바치도록 하여 실직과 軍직을 구별하고 있다. 軍직은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부여된 職名이라는 점에서 무록직이 아닌 녹직이며, 겸직만 있고 본직이 없는 관원에게 부여하는 관직이라는 점에서 본직의 성격을 가졌지만, 실제로 맡는 직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影職 또는 虛職이었다.²⁹⁾ 그런 점에서 軍직은 실직과 달랐다. 실직과 軍직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은 조선후기의 법전과 사료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³⁰⁾

軍직은 西班牙衙門인 五衛에 설치되었던 관직을 가리켰다.³¹⁾ 五衛는 조선전기의 군사조직으로, 태조로부터 세조까지 十衛→十司→十二司→十司→五司→五衛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위는 軍令機關인 五衛都總府의 통제를 받았다.³²⁾ 『경국대전』에는 五衛가 西班牙의 중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속대전』 이하에는 將의 품계가 중2품에서 정3품으로 강등되면서 정3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다.³³⁾

軍직은 녹봉을 받지 못하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서 채아직으로 운용되었다. 軍직은 녹직이라는 점에서는 실직과 같았고, 실무를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영직 또는 허직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겸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본직에 가까웠다.

實職은 文散階와 武散階에 의거하여 부여받아 정기적으로 녹봉을 받는 본직으로, 실제의 직무를 맡아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관직이었다. 실직은 本職, 祿職, 실무직, 정규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반대의 兼職, 無祿官, 虛職인 軍職, 임시직인 假官 등은 실직에 포함되지 않았다.

29) 이성무는 影職 또는 虛職을 散職이라고 표현하였고, 한충희는 散職 대신 虛職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성무, 앞의 책, 137-157면; 한충희, 앞의 책, 58-60면.

30) 『兩銓便攷』 「西銓」 單付 “三軍府事, 以時原任將臣隨品單付。【雖遞實職, 勿付軍衛。】”; 『승정원일기』 효종 3년 8월 26일 “實錄廳啓曰: 都廳郎廳金徽, 眼病甚重, 呈訴改差, 粉板郎廳李萬雄, 外任除授, 其代閑鼎重, 趙龜錫差下, 無實職者, 付軍職, 使之察任, 何如?”; 영조 45년 2월 21일 “上曰: 今番下教, 意蓋在矣, 既已下教, 亦何中止! 既已付職, 不過此宴, 何論實職, 軍職! 朴紘壽, 遞本職付軍職, 其代, 尹東哲子光心除授, 與紘壽一體陪宴。”

31) 한충희는 軍職이라는 어휘 대신 軍士職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十衛에 上將軍 이하 4,300여 개의 관직을 설치하면서 군사직이 성립되어 『경국대전』의 五衛에 上護軍 이하 3,336개의 군사직으로 정립되었다고 하였다. 한충희, 앞의 책, 62-63면.

32)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285-286면.

33) 『經國大典』 「兵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五衛;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

2) 散職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관직을 職事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實職과 散職으로 대별하였다. 실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5건의 ‘散職’이 검색되는데,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전기와 후기를 나눌 경우, 그중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태조실록』~『명종실록』에서 총 9건이 검색되고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선조실록』~『고종실록』에서 총 16건이 검색된다. 그중 조선전기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90세 이상 노인 100여 명을 모두 散職에 제수하였는데, 90세가 차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이를 속여 산직을 받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³⁴⁾

② 司憲府大司憲 韓致亨 등이 상소하였다.

“……그런데 수령만은 국왕의 임무를 분담하여 백성을 가까이하는 최고의 직임이지만 18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대부분 散職에 제수되고 罷職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너희들은 6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처자식을 봉양하였으니 이제 한가한 자리에 두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하고 애당초 이전에 국왕의 임무를 분담했던 노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령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수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우리 백성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³⁵⁾

③ 사헌부가 아뢰었다.

“『경국대전』 「刑典」 捕盜의 시상에 관한 조항에서 ‘원래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한 것이 신 등은 8품·9품 관직과 散職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前 內禁衛의 散職으로 어찌 당상의 자급에 합당하겠습니까! 신 등이 改正할 것을 청하여 윤허하시는 명을 내렸다가 구차하게 具贊의 전례를 따라 곧바로 명을 도로 거두어들였으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³⁶⁾

34) 『세종실록』 권85, 21년 5월 21일 己巳.

35) 『성종실록』 권10, 2년 6월 8일 己酉.

36) 『명종실록』 권5, 2년 3월 8일 己未.

①에서의 산직은 연로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제수하던 老人職을 가리킨다. 노인직이란 나라에서 연로한 사람에게 주던 자급이나 명예직을 말한다. 『경국대전』에서는 80세 이상이 되면 良民이나 賤民을 막론하고 한 자급을 주도록 하였다.³⁷⁾ 따라서 노인직으로서의 산직은 자급 또는 虛職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②에서의 산직은 ‘한가한 관직’ 또는 자급을 가리킨다. ②의 사례에서 서울의 관원은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면 승진하는데, 지방의 수령은 임기를 채우고 나면 산직에 제수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산직을 ‘한가한 자리’라고 표현하였으니, 수령의 임기를 채운 뒤에 제수되는 한가한 관직 또는 그때 올려주는 자급을 그 처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③에서의 산직은 前職 또는 前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前內禁衛를 산직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산직이 전직 또는 전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④ 『周禮』 80건을 못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당시 당하관으로서 散職에 있던 사람과 수령은 모두 하사받는 대상에 끼지 못하였으나, 副司直 奇震興과 星山縣監 洪重普만 특별히 하사를 받았다.³⁸⁾

⑤ 며칠 전에 吏曹參判 李健命이 李大成과 같이 政事를 행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이건명이 관직에 제수할 후보로 오랫동안 뽑히지 못했던 서너 사람을 한가한 관사들에 擬望하자, 이대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건명도 궐에 나와와서 그에 대해 변론하는 상소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신이 이대성과 같이 정사를 행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그 당시에 의망한 관직은 모두 해당 관사의 散職이었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職名이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후보자로 호명하였는데, 이것은 淸顯職에 의망한 것과는 다른 일이니 신이 어찌 의문을 가지고서 물어보겠습니까!”³⁹⁾

37) 『經國大典』 「吏典」 老人職 “年八十以上, 勿論郎賤, 除一階, 元有階者, 又加一階, 堂上官, 有旨乃授.”

38) 『인조실록』 권49, 26년 7월 26일 己丑.

39) 『숙종실록』 권51, 38년 2월 11일 甲子.

⑥ 옛날에 명나라가 科擧를 거행하여 선비를 뽑아서 대부분 지방으로 내보내 수령을 맡게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재능을 시험해본 뒤에야 승진시켜 임용하였다. 이것은 재능을 헤아려서 임무를 맡겨주는 훌륭한 제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제는 서울의 관직을 중시하고 지방의 관직을 경시하여 三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다 보니, 쓸모없는 관원과 散職이 누차 州와 牧을 맡기 때문에 ‘아침에는 典籍, 저녁에는 縣監’이라는 속담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⁴⁰⁾

④에서의 산직은 軍職을 가리킨다. 그 기사 안에서 산직에 있던 사람들은 『주례』를 하사 받지 못하였는데, 유일하게 부사직인 기진흥만 하사 받았다고 하였다. 부사직은 군직이므로, 여기에서의 산직은 바로 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직은 녹봉을 주기 위한 관직으로 그 자체로는 실무가 없는 관직이라는 의미에서 虛職 또는 影職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의 사례에는 軍職처럼 해당 관직의 이름으로는 직무를 맡지 않고 祿俸을 주기 위해 임명하는 관직, 賑恤穀을 자원해서 바친 사람에게 발급하는 空名帖 등을 산직으로 거론하였다.⁴¹⁾

⑤에서의 산직은 한가한 관사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사 안에서 ‘한가한 관사의 관직’이라고 하였으므로 산직은 허직 또는 영직이 아니고, 또 ‘청현직이 아닌 관직’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관직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산직은 한가한 관사의 관직으로, 실무가 있기는 하지만 사무가 번잡하지 않고 한가한 관직을 가리킨다. 그러한 의미의 산직은 實職과 兼職 중에서도 閑職 또는 閑散職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신하들의 상소와 차자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⁴²⁾

⑥에서의 산직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쓸모없는 관원[冗官]’과 함께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한가한 관사의 관직 등을

40) 『정조실록』 권5, 2년 2월 9일 庚子.

41)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2월 22일; 영조 7년 6월 4일; 영조 17년 12월 25일; 『老村集』 권3, 「跋」 故李將軍漆室憂國歌後跋 “宣廟既經大難, 日與將相諸臣講修疆圉. 公, 以此時, 上書獻計. 宰相有知其爲忠武薦者, 從容爲上白可用, 特命超授折衝階. 由是, 累爲副護軍、五衛將、僉知中樞府事, 然皆散職也.”

42)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9월 2일; 숙종 38년 2월 18일; 영조 7년 1월 15일; 영조 9년 1월 14일.

가리켰다고 할 수 있다. ⑥에서 인용한 속담에 나오는 典籍이 冗官이나 散職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법전에 규정된 산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전 중에서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각각 1회씩 산직이 보인다. 『경국대전』에서는 伴尙에게 부여하는 관직에 대해 ‘散職으로 종8품 10자리와 종9품 50자리를 준다.’라고 하여 伴尙의 숫자와 제수할 대상을 정해놓았다.⁴³⁾ 伴尙은 나라에서 宗親·儀賓·功臣·堂上官에게 정해진 숫자대로 지급하던 호위병을 가리켰다.⁴⁴⁾ 반당은 大君, 王子君, 公主에게 장가 든 尉, 功臣 등에게 배정하였고, 이들 반당에게는 서로 번갈아가며 산직에 제수하였다.⁴⁵⁾ 그런데 이때의 산직이 어떠한 성격의 관직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기존에는 이때의 산직도 ‘맡은 직무가 없는 관직’으로 보았으나, 그러한 의미의 관직은 앞에서 보았듯이 『경국대전』 안에서 影職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경국대전』 안에서 산직을 영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때의 산직은 散官 즉 자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공신에게 배정한 반당에게 실직과 산관을 주었던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⁴⁶⁾ 그리고 『경국대전』 「兵典」 番次都目 에서는 직종별로 각각 番次, 都目, 遞兒, 去官을 정해놓고 직종별로 부여하는 軍職遞兒 또는 雜職遞兒의 품계를 수록해 놓았으나, 반당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산직을 제수하였고 도목에 대해서만 정월과 7월 두 차례 거행한다고 정해 놓았을 뿐이고 나머지에 대한 규정이

43)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伴尙 “散職從八品十, 從九品五十. 大君、王子君、尙公主尉、功臣伴尙, 相遞除授.”

44) 『經國大典』 「兵典」 伴尙 “本曹啓差, 黃海、平安、永安等道居人, 則勿差. ○ 身沒, 則三年後定他役, 宗親、功臣、尉、副尉, 則妻存仍給, 有故勿充. 宦官, 無品伴尙. 大君, 十五; 王子君, 十二; 一品, 九; 二品, 六; 三品堂上官, 三; 一等功臣, 十; 二等功臣, 八; 三等功臣, 六; 四等功臣.” 『經國大典註解』에서는 ‘高麗 私兵의 폐해를 혁파하여 반당을 설치하였다. 伴은 ‘짝[侶]’의 의미이고, 尙은 ‘무리[輩]’의 의미이다.’라고 하여 반당이 私兵에서 유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經國大典註解後集』 「兵典」 伴尙 “革高麗私兵之弊, 設伴尙. 伴, 侶也; 尙, 輩也.”

45) 주) 43 참조.

46) 『세조실록』 권2, 1년 11월 7일 戊寅.

없다.⁴⁷⁾ 그렇게 한 이유는 산직이 관직이 아닌 자급이라서 나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속대전』 이하의 법전에서는 「兵典」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에 軍職遞兒를 부여하는 직종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당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산직은 군직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속대전』에서는 「兵典」에 散職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었는데, 그 항목에서 산직으로 수록된 관직은 忠壯衛將, 忠翊衛將, 空闕假衛將, 四山監役官이고, 산직이 있는 衙門으로 수록된 곳은 別軍職廳, 內司僕寺, 能麼兒廳, 儀仗庫이다. 따라서 이들 관직과 아문을 분석해 본다면 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별군직청에는 당상관으로부터 종9품까지 다양한 資級의 別軍職을 두되 정원이 없었으며, 당상관 이상은 加設僉知中樞府事를, 참상관은 加設訓練院主簿 이상을, 참외관은 加設部將을 부여하였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별군직은 모두 겸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사복시에는 3명의 內乘을 두되 2자리는 종2품부터 종9품까지의 관원이 겸직하고 1자리는 司僕寺正이 겸직하였다.⁴⁹⁾ 이 내승은 원래 『경국대전』 「兵典」 番次都目 ‘兼司僕’의 注에 있던 조항을 『속대전』에서 散職 안에 ‘內司僕寺’로 독립시켜 수록한 것이다. 내사복시의 관직도 모두 겸직이었다.

능마아청에는 당상관 3명과 낭청 4명을 두되 당상관 1자리는 訓練院都正이 겸직하고, 낭청 2자리는 訓練院習讀官이 겸직하였다.⁵⁰⁾ 영조 41년(1765)에 능마아

47) 예를 들면 隊卒과 彭排는 번차는 5번, 도목은 3도목, 체이는 군직체아로 종8품 31자리, 잡직체아로 정9품 126자리와 종9품 1,474자리를 주었으며, 종8품이 되면 거관하였다.

48) 『續大典』 「兵典」 散職 別軍職廳 “自堂上至九品。○ 孝宗朝, 以潛邸軍官陪往濟陽者八人, 區處設廳, 世稱八壯士, 其後漸增, 無定額。○ 每都日久勤, 兩銓各一人遷轉。○ 堂上以上, 加設僉知例付; 參上, 加設訓練院主簿以上隨品例付; 參外, 加設部將例付, 依元部將例仕滿陞六品。○ 經闕帥, 則減下。”

49) 『續大典』 「兵典」 散職 內司僕寺 “內乘三員, 二, 自從二品至九品通兼; 一, 司僕寺正例兼。原典, 見於番次都目兼司僕下註, 今員數無加減, 而別作內寺。○ 慶熙宮移御時, 加出一員。○ 參外, 仕滿六百陞六品。”

50) 『續大典』 「兵典」 散職 能麼兒廳 “堂上三員內, 一員, 訓練都正例兼。郎廳四員內, 二員, 訓

청을 훈련원에 통합한 뒤로는 三軍門의 中軍이 당상관 3자리를 겸직하였고, 낭청 2자리는 中人和 庶擊 중 만 30세인 사람으로 차출하였다.⁵¹⁾ 『육전조례』에 의하면, 능마아청의 參上郎廳은 능마아청의 參下郎廳을 역임한 사람을 單付하되 군직인 司果를 부여하여 겸하게 하였다가 30개월 뒤에 동반으로 보내 임용하게 하고, 참하 낭청은 중인과 서열 중 만 30세인 사람을 단부하되 군직인 司勇를 부여하여 겸직하게 하였다가 만 45개월 뒤에 동반으로 보내 6품으로 승진시킨다고 하였다.⁵²⁾ 이렇게 보면 능마아청의 관직은 모두 겸직이라고 할 수 있다.

儀仗庫에는 낭청 2명을 두되 部將이 겸직하였다.⁵³⁾

忠壯衛將과 忠翊衛將은 각각 3명씩을 두되 종2품이나 정3품으로 차출하였다.⁵⁴⁾ 『兩銓便攷』에 의하면, 충익위장과 충장위장은 동지충추부사 1자리와 첨지충추부사 3자리에 다른 衛將들과 함께 遞兒職으로 單付한다고 하였으며, 임기는 만 1년이라고 하였다.⁵⁵⁾ 따라서 충장위장과 충익위장은 겸직이라고 할 수 있다.

空闕假衛將은 비어 있는 궁궐인 景福宮·慶德宮·昌慶宮에 입직하는 假衛將으로, 궁궐마다 각각 3명씩을 두었다.⁵⁶⁾ 뒤에 慶德宮이 慶熙宮으로 바뀌었고, 假衛將은 衛將으로 바꾸어 遞兒職을 만든 뒤 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으로서 당상관 이상인 사람으로 차출하였다.⁵⁷⁾ 『양전편고』에 의하면, 앞의 충장위장 및 충익위장과 마찬가지로 궁궐위장도 충추부의 체아직인 동지충추부사와 첨지충추

鍊習讀例兼。參外，仕滿一千三百五十，考講陞六品。”

51) 『大典通編』「兵典」散職 能麼兒廳 “英宗朝乙酉，合付於訓練院，三軍門中軍例兼堂上，郎廳二員，以中庶中年滿三十人差出。”

52) 『六典條例』「兵典」兵曹 政色 除授 “能麼兒參上郎廳，以參下曾經人單付【付司果，三十朔後，送東敍用。】，參下，以中庶年滿三十人單付【付司勇，滿四十五朔，送東陞六。】”

53) 『續大典』「兵典」散職 儀仗庫 “掌各殿儀仗。【郎廳二員，部將例兼。】”

54) 『續大典』「兵典」散職 忠壯衛 “將三員。從二品或正三品差出，分番入直。”；『續大典』「兵典」散職 忠翊衛 “將三員。同忠壯衛。”

55) 『兩銓便攷』「西銓」單付 “同中樞一窠，僉中樞三窠，衛將中【禁軍將、五衛將、忠翊·忠壯將、慶熙·昌德·昌慶宮衛將。】，以遞兒單付。”；『兩銓便攷』「西銓」箇滿 “摠管、五衛將、忠翊·忠壯將、空闕衛將、文兼，周年瓜限。【五衛將履歷二窠，十二朔。】”

56) 『續大典』「兵典」散職 空闕衛 “景福宮、慶德宮、昌慶宮假將各三員同各衛入直空闕。”

57) 『大典通編』「兵典」散職 空闕衛將 “慶德宮，今爲慶熙宮。○空闕假衛將，除假字，作爲遞兒，以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堂上以上人通融擬差。”

부사에 단부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도 겸직이라고 할 수 있다.

四山監役官은 都城 안의 출입금지를 표시한 東道·西道·南道·北道를 나누어 관장하던 4명의 監役官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오는 蔭官에게 제수하였고 軍職의 遞兒祿을 받았다.⁵⁸⁾ 그런 점에서 사산감역관은 겸직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監役官을 參軍으로 바꾸고 4명의 參軍에게 각각 도성의 內四山과 外四山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東道參軍은 御營廳에, 西道參軍은 訓練都監에, 南道參軍은 禁衛營에, 北道參軍은 摠戎廳에 소속시키되, 동도·서도·남도의 참군은 武科에 及第하여 宣薦이 된 자로 차출하고 북도참군은 충용청의 哨官을 차출하여 겸직하게 하였다.⁵⁹⁾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수록된 산직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산직은 모두 西班職이라는 점이다. 산직이 東班職에는 없고 서반직에만 있다는 점에서는 軍職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군직은 본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산직과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산직은 대부분 兼職이었다. 산직이 처음 수록된 『속대전』에서는 본직인지 겸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그 뒤의 자료들에 의하면 산직은 모두 겸직이었다. 산직의 본직은 동지중추부사와 첨지중추부사처럼 實職도 있고 사과와 사옹처럼 군직도 있었다. 따라서 산직은 본직인 실직 및 군직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겸직은 正職에 포함되었으므로 산직도 정직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전에는 정직 및 雜職과 구별하여 ‘산직’이라는 항목을 독립적으로 두었으나, 산직도 무산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산직은 실무가 있는 관직이었다. 그런 점에서 산직은 실무가 없는 관직인 虛職 또는 影職과는 차이가 있었다.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수록된 산직은 실제로 맡는 직무가 있는 관직이

58) 『續大典』 「兵典」 散職 四山 “監役官四員，分掌都城標內東、西、南、北道，蔭官初仕受遞兒軍職祿，仕滿九百陸六品。”

59) 『大典通編』 「兵典」 散職 四山參軍 “罷監役官爲參軍，以宣薦出身擇差，東、西、南、北各一員，分掌都城內、外山。西道，屬訓局；東道，屬御營；南道，屬禁營；北道，則屬摠廳，而以本廳哨官中宣薦人兼差，專管外山，並仕滿三十朔陸六品。”；『典律通補』 「兵典」 散職 四山 “西屬訓局，東屬御營，南屬禁營，以宣薦出身差；北屬摠廳，以本廳哨官中宣薦人兼，專管外山，並仕滿三十朔陸六。”

였으므로 실무가 없는 虛職인 軍職과는 구별되었다.

散職은 西班에만 두었던 관직으로, 대부분 겸직이었고 실무가 있는 관직이었다. 산직은 대부분 겸직이라는 점에서는 실직과 달랐고, 실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군직과 달랐다. 그러나 산직도 무산계에 의거하여 제수된다는 점에서는 정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산직은 서반 정직의 하나로, 잡직·실직·군직·허직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다.

3. 正職과 遞兒職의 관계

1) 正職

정직도 실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법전과 사료에서 정직은 잡직이나 실직과 관련되어 거론된 사례가 많이 등장하므로, 이 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정직은 雜職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 ① 馬醫·道流·畫員은 자급이 正職과 같다. ○ 正職에 제수할 때에는 한 자급을 강등한다.⁶⁰⁾
- ② 校書館의 唱准·粧册諸員, 承文院의 紙鍊書員·時仕畫員, 여러 곳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正職에 제수되더라도 그들에 대한 물품 공급은 모두 雜職의 예에 따른다.⁶¹⁾
- ③ 破陣軍은 正兵의 예에 따라 12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자급을 올려주되, 파진 군이 良人이면 정직 정3품까지만 올려주고 賤人이면 잡직 정6품까지만 올려준다.⁶²⁾

60) 『經國大典』 「吏典」 雜職 “馬醫、道流、畫員，則階同正職。○ 授正職時，降一階。”

61) 『大典續錄』 「戶典」 支供 “校書館唱准·粧册諸員、承文院紙鍊書員·時仕畫員及凡諸處功役人，雖授正職，其供饋，竝依雜職例。”

62) 『大典後續錄』 「兵典」 除授 “破陣軍，依正兵例，仕滿一百二十加階，良人，正職正三品而止，賤人，雜職正六品而止。”

④ 또 아뢰었다.

“잡직에 제수된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간을 채워 다른 자리로 옮겨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정직을 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서울 관사의 訟事를 담당하는 관원이나 지방의 수령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관사에 포진하고 있어 다른 자리로 옮겨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6품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전후로 계속 나와서 항상 적체되는 것이 걱정스러우니 변통하여 해소시킬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雜科와 雜岐로 6품으로 승진시켜야 할 사람은 모두 送西【送西는 西銓으로 보내 軍銜을 부여하는 것이다. 吏曹가 東銓이고, 兵曹가 西銓이다.】하여 司果를 부여하고 동반의 정직을 제수하지 마소서.”⁶³⁾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정직이 잡직과 구별되어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직에는 文科 또는 武科에 及第한 사람 및 蔭敍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수하고, 平民이나 庶孽과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에 제수하지 않았다.⁶⁴⁾ 이처럼 정직은 문산계와 무산계에 의거하여 士族에게 제수하는 관직이었고, 잡직은 雜職階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관직으로 工人·商人·賤民 등을 임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관직이었다.⁶⁵⁾ 따라서 잡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직은 문산계와 무산계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동반과 서반의 모든 관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⁶⁶⁾

『경국대전』에는 상당히 많은 잡직이 정직과 구별되어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속대전』 이하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삭제되고 일부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한 사실은 『대전통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⁷⁾

63) 『숙종실록』 권62, 44년 12월 16일 己未.

64) 『명종실록』 권30, 19년 12월 21일 己丑.

65) 이성무, 앞의 책, 109-114면. 한충희, 앞의 책, 51면. 이성무는 良人이 잡직을 받을 경우에는 천민과 구별하여 雜職階를 받지 않고 文散階나 武散階를 받았다고 하였다.

66) 윤국일은 正職에 대해 ‘정직은 정규적인 벼슬 또는 정식벼슬이란 의미에서 정직이라고 하는데 잡직에 상대하여 쓰는 말이다. 조선조 통치자들은 문무양반들이 하는 벼슬을 정직이라 하고 기술자들이 하는 벼슬을 잡직이라 하여 엄격히 구별했다.’라고 하였고, 雜職에 대해서는 ‘잡직은 경험이나 기술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또는 그 소임에 종사한 시일에 따라 주는 벼슬이다. 문무관들이 하는 벼슬을 정직이라고 하는 반면 이런 벼슬을 잡직이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윤국일, 2005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86-87면.

67) 『大典通編』 「吏典」 雜職 “原典雜職, 太半今廢, 故移置掖庭署於諸職之首, 而仍舊載錄. 校書館, 司僕寺, 掌樂院, 圖畫署之時存員數, 亦移錄於本衙門之下, 其餘分番, 計仕, 去官, 仍

잡직은 모두 遞兒職으로, 잡직을 받은 사람은 정6품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한 계를 두었으며, 잡직의 품계를 받았던 사람이 동반이나 서반 정직의 품계를 받을 경우에는 한 자급을 낮추어서 받았다.⁶⁸⁾

정직을 잡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實職은 물론이고 軍職과 兼職도 모두 정직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직과 실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⑤ 李亨達가 草記를 入啓하였다. 병조의 草記는 다음과 같다.

“전교하시기를 ‘이 일은 매번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堂上宣傳官 및 五衛將·忠壯將·忠翊將은 모두 兼職으로, 오위장·총장장·총익장은 下批한 뒤에 僉知中樞府事를 부여하는데 선전관은 중추부의 직함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軍衛도 부여하지 않으니, 官制로 헤아려볼 때 너무도 의미가 없다. 그 곡절을 병조에서 초기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續大典』을 살펴보니 同知中樞府事 1자리와 첨지중추부사 3자리는 衛將의 遞兒職으로 기록되어 있고, 禁軍將·오위장·총장장·총익장은 모두 겸직이기 때문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으레 동지중추부사나 첨지중추부사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상선전관의 경우에는 중간에 설치된 자리이기 때문에 본직인지 겸직인지 정해진 제도가 아직 없어서 중추부의 직함과 균함을 의례적으로 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아쉽니다.” 주상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정해진 관직도 아니고 정해진 관직도 없다니, 어찌 이와 같은 관제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參上宣傳官의 경우에도 實職으로 보아 거행하는지 겸직으로 보아 거행하는지 모르겠다. 당상선전관의 자리를 실직으로 처리하는 사안과 함께 하나로 결론을 지어 이치를 따져 초기로 보고하라.”

金峙默이 초기를 입계하였다. 병조의 초기는 다음과 같다.

“本曹의 초기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라고 명하셨습니다. 『속대전』 「병전」 정삼품아문 ‘宣傳官廳’을 살펴보니 선전관은 ‘나중에 정직으로 만들어 인원을 늘리고 선전관청을 설치하였다.[後爲正職, 增員設廳]’라고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상선전관의 자리가 실직이고 보면 새로 설치한 당상선전관의 자리도 실직으로 보아 거행해야 합니다. 신이 어리석어 잘못을 저지른 탓에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누차 하문하시게 만들었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감히 아쉽니다.” 주상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당상선전관과 참상선전관이 정직이라고 한다면 오위장만 정직이 아닐 수가 있는

仕等法及各色遞兒, 并皆刪節, 只仍錄員數、品數, 以爲省繁存舊之地.”

68) 『經國大典』 「吏典」 雜職 “授正職時, 降一階.”

가! 총장장과 총익장도 정직이 아닐 수가 있는가! 저 선전관은 정직으로서 또 실직이 있는데, 이 오위장·총장장·총익장만은 정직이면서도 실직이 없다. 그 곡절을 더욱더 조사해서 하나로 결론을 지어 초기로 보고하라.”⁶⁹⁾

⑥ 李亨達가 초기를 입계하였다. 병조의 초기는 다음과 같다.

“본조의 초기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전관과 여러 위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정직이지만 정직의 안에서도 실직과 겸직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위장의 경우에는 본래 겸직으로 으레 遞兒職인 중추부의 직함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선전관의 경우에는 본래 실직인데 중추부의 직함을 부여한다면 이중으로 실직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말 듯합니다. 겸직으로 보아 실직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직으로 보아 별도의 실직을 부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관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이 본래 관제에 어두워서 여러 차례 하문하셨는데도 명백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몹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주상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알았다.”⁷⁰⁾

⑤와 ⑥은 정조의 전교와 병조의 초기를 통해 정직 및 실직·겸직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⑤와 ⑥의 사례에서 논란의 핵심은 선전관 및 오위장·총장장·총익장을 실직으로 볼 것인지 겸직으로 볼 것인지라고 하겠다. 이들 관직을 겸직으로 본다면 겸직하기 위한 본직으로 실직인 중추부의 직함이나 군직을 부여해야 하고, 실직으로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조는 이들 관직을 모두 겸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전관도 오위장·총장장·총익장과 마찬가지로 중추부의 직함이나 군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조는 선전관은 본직인지 겸직인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추부의 직함이나 군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정조의 질책을 받고 난 뒤에는 선전관은 『속대전』에서 正職으로 설치하였으므로 당상이건 참상이건 모두 실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정조가 선전관이 정직이라면 오위장·총장장·총익장도 똑같이 정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저 선전관의 경우에는 정직으로 실직까지도 있고, 이 오위장·총장장·총익장만은 정직이면서도 실직이 없다.”라고 하여 양자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조의 말 속에는 선전

69)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5일.

70)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8일.

관 및 오위장·총장장·총익장이 모두 정직이면 선전관뿐만 아니라 오위장·총장장·총익장도 똑같이 실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담겨 있다. 정조의 지적에 따라 병조가 다시 답변한 것이 바로 ⑥의 사례이다. 이때 병조의 답변 안에서는 '정직의 안에서도 실직과 겸직의 구별이 있다.'라고 하여 동일한 정직이라도 정직 안에서 실직과 겸직을 구별하였다. 선전관은 정직이면서 실직이기 때문에 중추부의 직함이나 군직을 부여하지 않고, 오위장 등은 정직이면서 겸직이기 때문에 중추부의 직함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정직 안에는 실직과 겸직이 포함되며, 겸직은 본직 곧 실직이나 군직이 있어야 하고 본직이 없으면 본직에 해당하는 중추부의 실직이나 五衛의 군직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 「병전」 番次都目に 의하면, 선전관은 정3품 1명 및 종4품·종5품·종6품·종7품·종8품·종9품 각 1명 등 총 8명으로 軍職의 遞兒祿을 받았다. 『대전통편』 「병전」 번차도목에 의하면, 선전관이 正職으로 바뀌고 정원도 선전관과 무신겸선전관을 합쳐 74명까지 늘어나고 선전관청이 설치된 뒤에도 선전관은 여전히 군직의 체아록을 받았다. 이것은 실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녹봉을 받지 못하고 군직을 통해 녹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만 선전관에 제수되면 실직에 제수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직에 제수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오위장·총장장·총익장은 사정이 이와는 달랐다. 오위장은 다른 관직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고, 총장장과 총익장은 『속대전』 「병전」 散職에 수록되어 있다. 총장장과 총익장은 원래 호칭이 忠壯衛將과 忠翊衛將으로 오위장과 마찬가지로 衛將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속대전』에서는 동지중추부사 1자리와 첨지중추부사 3자리를 衛將의 체아직으로 지정해 놓았다.⁷¹⁾ 따라서 오위장·총장장·총익장에 제수되면 위장의 체아직으로 지정된 동지중추부사나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고 해당 자리가 없으면 군직에 제수하여 이들 자리를 겸임하게 하였다.

선전관은 실직이고 오위장·총장장·총익장은 겸직이었으나, 이들 관직이 모

71)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同知事八員【從二品。『原』 七員。『續』 加一員, 衛將遞兒。】。僉知事八員【正三品。『續』 三員, 衛將遞兒。】”

두 정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이처럼 無祿職인 겸직이 정직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른 무록직인 無祿官도 정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⑤와 ⑥의 사례에서는 軍職이 정직 안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실직이자 본직으로 중추부의 직함을 거론하면서 군직을 함께 거론한 것을 보면 군직도 정직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⑦ 사간원이 아뢰었다.

“……官爵은 군주가 쥐고 있는 큰 권한으로 사대부를 대우하는 도구이니, 하찮은 자급의 관직이라 하더라도 미천한 사람들에게 마구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林世昌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軍職을 부여하라고 명하셨으므로 여론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아들에게까지 마구 시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시상하는 은전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니, 관작이 아니더라도 어찌 시상할 수 있는 물건이 없겠습니까! 게다가 이 군직이 하찮은 관직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서반의 정직입니다. 만약 이 군직을 하찮은 관직이라고 생각하여 마구 제수하는 실마리를 한 차례 열어두게 되면 점차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니, 관직은 이로부터 가벼워지고 요행의 문은 이로부터 열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속히 명을 거두어주소서.”⁷²⁾

⑧ 100섬 이상 헌납한 사람에 대한 시상. 【判官·主簿·察訪 중에서 加設職의 帖文을 작성해 주되,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通德郎이나 副司果 등의 正職 教旨로 바꾸어주며, 모두 10년까지 煙戶雜役을 부과하지 않는다. 첩문을 받아 加資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⁷³⁾

⑦의 사례에서는 林世昌에게 부여하라고 한 군직을 서반 정직이라고 하였고, ⑧의 사례에서는 군직인 종6품 副司果를 정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군직도 정직 안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정직은 실직, 겸직, 군직, 무록관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부터는 정직이 실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72) 『중종실록』 권85, 32년 9월 15일 辛卯.

73) 『영조실록』 권32, 8년 7월 5일 己丑.

⑨ 주상이 말하였다.

“加資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李台佐가 아뢰었다.

“勸分하였을 경우로 말하면 正職에 제수해야 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동반의 實職에 빈자리가 생기면 즉시 제수하라.”⁷⁴⁾

⑩ 李在協이 초기를 입계하였다. 예조의 초기는 다음과 같다.

“圖畫署의 司果 녹봉을 받는 遞兒職의 자리가 비면, 전부터 국가를 위해 봉사하여 공로를 세우고 정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차례차례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아직을 부여받아 녹봉을 받던 金德夏가 이제 사망하였으니, 전후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여 공로를 많이 세우고 실직을 역임한데다가 取才에서 수석까지 차지한 畫員 金厚臣을 전례대로 그 후임으로 삼아 영구히 부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⁷⁵⁾

⑪ 內侍 李奉貞의 아들 李物이 宣祖의 御製와 御筆을 바치자, 이물을 6품의 實職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 【史臣이 평하기를, “일개 내시의 양아들에게 갑자기 6품의 正職을 주었으니, 매우 官爵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였다.】⁷⁶⁾

⑨~⑪은 정직을 실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 사례들이다. ⑨에서는 정직에 제수해야 한다는 이태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조가 실직에 제수하라고 하였고, ⑩에서는 정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차출하는 도화서의 체아직 자리에 실직을 역임한 김후신을 차출하겠다고 하였으며, ⑪에서는 선조가 이물에게 실직을 제수하라고 하였는데, 사관은 그 실직을 정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직이 실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사료에서는 이처럼 실직과 정직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 기사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⁷⁷⁾ 이처럼 정직을 실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실직에 포함되지 않는 겸직·무록관·군직도 자연히 정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료에서 군직을 정직과 별개의 관직으로 설명한 사례들은 정직을 실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직은 잡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직계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74) 『승정원일기』 영조 5년 4월 9일.

75)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2월 18일.

76) 『인조실록』 권49, 26년 윤3월 17일 壬午.

77) 『승정원일기』 숙종 9년 1월 5일; 숙종 12년 12월 3일; 정조 11년 2월 8일.

동반과 서반의 모든 관직을 가리켰다. 이러한 정직의 안에는 실직은 물론이고 겸직과 군직도 모두 포함되었으며, 무록직도 포함되었다. 좁은 의미의 정직은 실직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정직의 안에는 실직과 마찬가지로 겸직과 무록관 및 군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2) 遞兒職

遞兒職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관직을 일정 기간마다 교대로 맡고 그 맡은 기간만 녹봉을 받도록 한 관직을 가리켰다. 遞兒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나’의 의미로 보는 견해와 ‘번갈아가며 주는 관직’의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재룡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遞兒를 ‘아나’의 의미로 풀이한 것에 근거하여 ‘아나 이 것 받아라.’의 ‘아나’의 의미로 보았다.⁷⁸⁾ 반면 신유아는 ‘遞’는 ‘갈마들다.’나 ‘교체하다.’의 의미로 보고, ‘兒’는 어조사로서 동사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어미의 역할로 보아, 체아를 ‘교체되는 직’으로 보았다.⁷⁹⁾ 柳馨遠은 내의원과 관상감 등의 체아직을 혁파하고 책임자를 골라 임명할 수 있는 일정한 관직의 설치를 주장하면서 체아를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① 일정한 녹봉이 없고 사계절마다 강독 시험을 보인 뒤 그 점수를 바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높이거나 내리서 녹봉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체아라고 한다.⁸⁰⁾

위에서 ‘사계절마다’라고 한 것은 체아직의 관원을 평가하는 주기인 都目を 가리킨 것으로, 직종마다 평가하는 주기가 달랐다. 『경국대전』 「병전」 番次都目에는 체아직을 받는 職種의 番次·都目·遞兒·去官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중 도목은 직종에 따라 2도목, 3도목, 4도목, 6도목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체아직은 하나의 관직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78) 이재룡, 앞의 논문, 7-8면: 『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 論文類 文字 語錄辨證說 “遞兒。【口氣。訓아나.】”

79) 신유아, 2013 『조선전기 체아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면.

80) 『磻溪隨錄』 권16, 「職官之制下」 職官因革事宜 “醫司、觀象監、司譯院, 亦皆擇人定任, 罷今遞兒之規。【無定祿, 而四時考講, 以其分數, 遞相高下付祿, 謂之遞兒.】”

반드시 여러 사람이 맡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 즉 체아직은 番次를 나누고 그에 따라 차례로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관직이었으나, 번차를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를 長番이라 하였는데, 장번은 해당 체아직에 제수할 사람을 여러 명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두되, 도목 때마다 실적 평가에 따라 교체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⁸¹⁾

체아직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으로는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서 본래 녹봉이 책정되어 있는 관직에 별도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녹봉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관직이라면 그 관직이 實職이거나 軍職이거나 雜職이거나 관계없이 체아직으로 운용할 수가 있었다.⁸²⁾ 즉 체아직은 관직의 운용 측면에서 나온 개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직과 잡직은 물론이고 실직과 군직을 모두 포함하는 정직도 체아직으로 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직과 체아직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체아직은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관직으로 有祿遞兒職이 대부분이었지만, 체아직 중에는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無祿遞兒職도 있었다. 중종 2년(1507)에 쓸모없는 관직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瑞葱臺의 監役官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나중에 監役할 때를 위해서 無祿遞兒職을 부여한 사실이 보인다.⁸³⁾

81) 『경국대전』 「병진」 番次都目에는 宣傳官과 內禁衛 등은 長番으로 규정되어 있고, 親軍衛는 2번番, 別侍衛는 5번으로 규정되어 있다.

82) 신유아는 “체아직으로 사용하는 직은 해당 직에 대한 녹봉의 財源이 마련되어 있는 직 가운데 餘席이 있으면, 어느 직이든 이를 체아직으로 가져다 쓸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신유아, 앞의 논문, 35면.

83) 『중종실록』 권4, 2년 11월 15일 甲寅. 위의 사례 중 洪景舟의 말인 ‘有祿遞兒, 則無之: 無祿遞兒, 則果有之.’에 대해 신유아는 기존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祿이 있으면 체아가 없고, 祿이 없으면 체아가 과연 있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체아직은 일정한 녹봉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은 柳順汀의 “서충대의 監役할 일이 지금은 없지만 만일 있을 경우에는 감역관 등을 갑자기 혁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록체아직을 부여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을 받은 것으로, “녹봉이 있는 체아직을 부여받은 감역관은 없고 녹봉이 없는 체아직을 부여받은 감역관은 실로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듯하다. 위의 논문, 14-15면.

이재룡은 『경국대전』의 체아직을 동반체아직(160), 서반체아직(3,005), 잡직체아직(1,751)으로 나누고, 잡직체아직은 다시 동반잡직체아직(144)과 서반잡직체아직(1,607)으로 나누었다.⁸⁴⁾ 신유아는 체아직을 현직에 종사할 때 부여하는 現職遞兒와 현직에서 물러날 때 부여하는 去官遞兒로 대별한 뒤 다시 현직체아는 內侍遞兒 23직, 雜職遞兒 257직, 軍士遞兒 4,492직으로 나누고, 거관체아는 仍仕遞兒와 散官遞兒로 나누어 세분화하였다.⁸⁵⁾

체아직은 실직·군직·잡직 등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관직이 아니라, 녹봉이 책정되어 있는 이들 실직·군직·잡직 중에 체아직을 설정하고 해당 체아직을 부여받은 관원에게 해당 체아직의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아직은 어떤 관직에 체아직을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분류할 경우에 체아직은 實職遞兒, 軍職遞兒, 雜職遞兒로 나눌 수 있겠다.

實職遞兒란 實職에 설정된 체아직을 가리킨다. 다만 실직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아직을 설정하지 않았다. 체아직이 설정된 실직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② 參奉은 醫員의 체아직으로, 1년에 2차례 都目을 거행한다.⁸⁶⁾
- ③ 종2품: 동지중추부사이다. 1자리를 추가한다. 【衛將의 체아직이다.】 정3품: 첨지중추부사이다. 【8자리 중 3자리는 衛將의 체아직이다.】⁸⁷⁾
- ④ 空闕假衛將은 假 자를 없애고 체아직으로 만들며, 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 당상관 이상인 사람으로 통틀어 의망하여 차출한다.⁸⁸⁾

84) 이재룡, 앞의 논문, 25-37면.
 85) 신유아, 앞의 논문, 13면.
 86) 『經國大典』「吏典」京官職 活人署 “【掌救活都城病人。提調, 一員。參奉, 醫員遞兒, 兩都目。】從六品, 別提, 四員。從九品, 參奉, 二員。”
 87) 『續大典』「兵典」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從二品: 同知事, 加一員。【衛將遞兒。】正三品: 僉知事。【八員內三員, 衛將遞兒。】”
 88) 『大典通編』「兵典」散職 “空闕假衛將, 除假字, 作爲遞兒, 以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堂上以上人通融擬差。”

②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조항으로, 종9품인 活人署參奉 2자리는 醫員에게 주는 체아직으로 설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활인서참봉은 동반의 실직이자 정직이지만, 의원에게 주는 체아직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의원에게는 실직 이외에도 군직에 설정된 체아직도 주었다. 『대전통편』 「병진」 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에는 종4품 副護軍 4자리, 종5품 副司直 5자리, 종6품 副司果 3자리, 종7품 副司正 3자리, 종8품 副司猛 6자리, 종9품 副司正 2자리가 의원의 체아직으로 설정되어 있다.⁸⁹⁾ 활인서참봉에 설정된 체아직을 실직체아라고 한다면, 五衛의 군직에 설정된 체아직을 軍職遞兒 또는 軍衛遞兒라고 할 수 있다.⁹⁰⁾

③은 『속대전』에 수록된 조항으로, 중추부의 종2품 동지중추부사 8자리 중 1자리와 정3품 첨지중추부사 8자리 중 3자리는 모두 衛將에게 주는 체아직으로 설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衛將은 서반직인 五衛將 · 忠壯衛將 · 忠翊衛將 · 空闕衛將을 가리킨다. 그중 오위장은 다른 관원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⁹¹⁾ 오위장은 겸직이기 때문에 오위장을 겸직하고 녹봉을 받기 위해서는 본직에 해당하는 관직에 별도로 제수되어야 했는데, 그 본직에 해당하는 관직이 중추부의 동지중추부사나 첨지중추부사였던 것이다. 오위장에게 제수하는 중추부의 동지중추부사나 첨지중추부사는 실직이므로 이를 실직체아라고 할 수 있다.

④는 『대전통편』에 수록된 조항으로, 기존의 空闕假衛將을 空闕衛將으로 바꾸고 사자관과 화원 등의 체아직으로 만든 것이다. 공궐가위장은 慶德宮 · 慶德

89) 이 숫자는 『대전통편』 「병진」 番次都目과 대조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그중 종7품 副司正은 五衛 에 내의원 의원 2자리와 전의감 의원 1자리를 합쳐 모두 3자리로 되어 있으나, 番次都目에는 내의원 의원 2자리로만 되어 있다.

90) 최정환은 軍職遞兒와 軍衛遞兒를 구별하여 軍衛遞兒는 軍職遞兒의 후신이라고 하였으나, 『속대전』 이후의 법전에서는 軍職遞兒와 軍衛遞兒를 혼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軍職遞兒의 용례가 더 많이 보인다. 최정환, 앞의 논문, 273-274면; 『續大典』 「戶典」 祿科 “軍職移拜實職未及受祿之員, 許付軍職遞兒.”;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 “今五衛兵制盡罷, 獨存官名, 將及部將, 分番入直巡更, 護軍, 司直, 司果, 司正, 司猛, 司勇, 屬軍衛遞兒, 減其祿窠, 以待各色人員陞降來付者.”;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 “軍職遞兒祿, 一年分四等, 以四季朔陞降, 祿都目啓下後, 具錄受祿人職, 姓名, 移文戶曹.”

91) 『經國大典』 「兵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五衛 “從二品, 將十二員。【以他官兼。】”

宮·昌慶宮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원래 서반의 군직체아를 받았다.⁹²⁾ 그러다가 영조 35년(1759)에 병조판서 李昌壽의 건의에 따라, 당상관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잡직의 관원으로 차출하던 총장위장과 총익위장을 앞으로 內禁衛將이 될 만한 사람으로 차출하고 대신 공궤가위장을 공궤위장으로 바꾸어 실직체아로 만들고 잡직의 관원으로 차출하도록 변경하였다.⁹³⁾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반영한 조항이 ④이다. 다만 이때의 공궤위장이 실직체아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궤위장은 오위장·총장위장·총익위장과 함께 위장으로 통칭하였고, 이들 위장은 겸직으로 ③에 규정된 것처럼 중추부의 실직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보면 ④에서 말한 체아직은 ‘중추부의 실직체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듯하다.

軍職遞兒란 軍職에 설정된 체아직을 가리켰다. 여기에서 軍職은 西班衙門인 五衛에 소속된 관직을 말하며, 오위의 군직은 겸직인 將 및 內三廳으로 옮겨진 部將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아직으로 운용되었다.⁹⁴⁾ 『속대전』과 『대전통편』에서는 각 군직체아 중 일부를 原祿遞兒로 규정하였고, 『전율통보』에서는 각 군직체아를 原祿遞兒와 雜遞兒로 나누었으며, 『육전조례』에서는 原軍職과 雜遞兒로 나누고 있다.⁹⁵⁾ 그렇다고 하면 군직체아는 原祿遞兒와 雜遞兒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원록체아는 東班과 西班의 正職을 역임한 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92) 『續大典』 「兵典」 散職 “景福宮、慶德宮、昌慶宮假將各三員同各衛入直空闕.”; 『광해군일기』 권44, 10년 4월 13일 壬寅.

93)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1월 8일.

94) 『경국대전』에는 五衛將을 겸직으로 수록하였고, 『속대전』에는 部將을 內三廳으로 옮겨두고 하였다. 『經國大典』 「兵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五衛 “從二品, 將, 十二員. 【以他官兼.】”;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五衛 “從六品, 部將. 【二十五員內, 參外十四員, 南行參外一員. ○ 五衛罷後, 移付內三廳.】”

95) 『典律通補』 「兵典」 京官職 五衛 “將 【十二, 正三. 『經』 『續』 ○ 二, 稱曹司. 『續』 ○ 兼. 『經』, 上護軍 【八, 堂下正三. 『經』 『續』 ○ 二, 原祿遞兒; 六, 雜遞兒. 『續』, 大護軍 【十二, 從三. 『經』 『續』 ○ 二, 原祿遞兒; 十, 雜遞兒. 『續』, …….”; 『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 祿牌 “堂下正三品 【訓練正. ○ 上護軍. ○ 原軍職, 副使越江, 則付之. ○ 雜遞兒, 行首宣傳官、製述官一、寫字官一、禁軍三.】, 從三品 【訓練副正二、平安兵虞候、北虞候. ○ 大護軍. ○ 雜遞兒, 親功臣五、功臣嫡長二、南虞候、宣傳官一、寫字官一.】, ……”

부여하던 군직을 가리켰고, 잡체아는 雜職의 관원이나 軍兵 등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던 관직을 가리켰다.

『경국대전』에서는 군직체아를 어떠한 職種에 몇 자리씩 배정하였는지를 「병전, 番次都目에 수록하였고,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에서는 五衛와 番次都目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법전의 五衛와 番次都目에 의하면 동반의 잡직에 해당하는 사역원의 譯官, 관상감의 習讀·禁漏官·述者·命課學教授, 전의감의 習讀·醫員, 내의원의 醫員, 해민서의 聰敏·治腫, 승문원의 吏文學官·寫字官·製述官, 도화서의 畫員, 교서관의 補字官·唱準, 형조의 律學, 永禧殿監, 奎章閣監 등에게도 군직체아를 주었고, 동반의 정직인 통례원의 兼引儀·假引儀 및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守令과 邊將의 경우에도 군직체아를 주었으며, 그 외에 功臣嫡長과 承襲君에게도 군직체아를 주었다. 이들은 모두 군직체아 중 잡체아를 받은 경우이고, 동반 관원으로서 원록체아를 받은 숫자까지 합한다면 동반 관원에게 부여하는 군직체아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雜職遞兒란 雜職에 설정된 체아직을 가리킨다. 잡직은 동반잡직과 서반잡직으로 나누어지므로 잡직체아도 동반잡직체아와 서반잡직체아로 나눌 수가 있다. 동반잡직체아는 賤流가 받는 관직으로 총 144자리이고, 서반잡직체아는 隊卒 600자리, 彭排 1,000자리, 破陣軍 7자리 등 총 1,607자리이다.⁹⁶⁾ 이들 잡직은 모두 체아직으로 운용되었다.

체아직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관직을 일정한 기간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맡고 그 맡은 기간만 녹봉을 받던 관직으로, 관직에 체수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배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체아직은 정직 또는 실직과 별개로 설치된 관직이 아니라, 녹봉이 설정되어 있는 관직이면 그것이 실직과 군직, 정직과 잡직을 막론하고 어떤 관직이나 모두 체아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96) 이재룡, 앞의 논문, 34-35면.

4. 加設職과 權設職의 관계

1) 加設職

加設職은 법전에 규정된 東班과 西班의 관직 중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한 관직을 가리켰다. 따라서 가설직의 직명은 정직과 동일하였고 그 숫자만 늘렸다. 가설직은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운용되었던 添設職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첨설직이란 軍功을 세운 사람에게 상으로 내려주기 위해 기존 관직의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한 관직으로, 공민왕 6년(1357)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가 조선이 건국된 뒤에는 태조 때부터 폐지하기 시작하여 태종 때부터는 더 이상 첨설직에 제수하지 않았다.⁹⁷⁾

조선시대의 법전에서는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법전에서 가설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동반과 서반 관직의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한 관직이 가설직이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인 임진왜란 때는 軍功을 세우거나 貧民을 구제한 사람 등에게 상으로 관직을 제수할 경우에 가설직을 빈번히 활용하였다.⁹⁸⁾

『속대전』 등의 법전과 사료에서 거론한 가설직은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 기존의 관직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가설하였다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었다. 종친부와 돈녕부의 都正, 廣興倉의 令, 軍資監의 參下官, 中樞府의 同知中樞府事와 僉知中樞府事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⁹⁹⁾

97) 이성무, 앞의 책, 148-151면.

98) 『선조실록』 권43, 26년 10월 6일 丙戌: 권46, 26년 12월 27일 丙子: 권53, 27년 7월 16일 壬辰.

99) 『大典通編』「吏典」京官職 正一品衙門 敦寧府 “都正一員加設, 以大院君奉祀孫世襲, 若陞資, 則隨品加設同知事、知事.”; 『大典會通』「吏典」京官職 正一品衙門 宗親府 “都正一員加設, 以宗姓文官差出, 有司例兼.”; 『大典會通』「吏典」京官職 正三品衙門 軍資監 “主簿【從六品。『原』三員。『續』減二員。】。直長【從七品。『原』一員。】。奉事【從八品。『原』一員。○ 以上, 隨仕加設或二或三以備三員。】.”; 『大典會通』「吏典」京官職 正四品衙門 廣興倉 “令, 以實職中曾經守令, 奉事, 以參外實職, 戶曹自辟。奉事以上, 仕滿次次陞付, 至主簿, 仍用詞訟滿六朔, 令加設陞付。○ 加設令以下有缺, 還作奉事差出.”; 『大典會通』「兵典」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百歲以上人, 同知事加設單付。○ 知事、同知·僉知事加設者,

둘째, 기존 법전의 정원보다 숫자를 늘려서 새로운 법전에 반영하여 사실상 고정적인 관직이 되었으나, 추가로 늘린 관직이라는 점에서 가설직이라고 부르는 경우이다. 捕盜廳의 部將과 訓練院의 主簿 등이 그에 해당한다.¹⁰⁰⁾ 이러한 가설직은 職名 앞에 ‘加設’ 2자를 붙여 ‘加設部將’, ‘加設主簿’ 등으로 불렀다. 중추부의 가설직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老人職으로 제수하기 위해 가설한 지 중추부사·동지중추부사·첨지중추부사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노인에게 제수하였다가 1개월이 지나면 減下하였다. 또 하나는 衛將의 체아직으로 가설한 동지중추부사와 첨지중추부사로, 상황에 따라 減下하지 않고 고정적인 실직이 되었다.¹⁰¹⁾ 전자는 가설직 중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둘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셋째, 實官 또는 實銜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차출하는 관원인 假官 또는 假銜의 경우이다. 다만 假官은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의 가설직과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가설직들은 법전에 가설 여부 및 그 숫자가 수록되어 있으나 가관 또는 가함은 법전에 정원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¹⁰²⁾ 승정원의 假承旨와 假注書가 대표적인 가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관 또는 실함이 정규직이라면 가관 또는 가함은 임시직 또는 계약직이라 할 수 있다.

가설직은 동반과 서반의 관직 중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한 관직으로, 법전에

過一朔減下.”

100) 『續大典』 「兵典」 軍營衙門 捕盜廳 “各部將四, 無料部將二十六, 加設部將十二. 【三江門外, 禁軍分屬, 兩廳譏察.】”; 『續大典』 「兵典」 散職 別軍職 “堂上以上, 加設僉知例付: 參上, 加設訓練主簿以上隨品例付: 參外, 加設部將例付, 依元部將例仕滿陞六品.”;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訓練院 “僉正十二員【從四品. 『原』 二員. 『續』 加二員. 『補』 加八員.】, 判官十八員【從五品. 『原』 二員. 『續』 加六員. 『補』 加十員.】, 主簿三十八員【從六品. 『原』 二員. 『續』 加十六員. 『補』 加二十員.】”

101)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同知事八員【從二品. 『原』 七員. 『續』 加一員, 衛將遞兒.】, 僉知事八員【正三品. 『續』 三員, 衛將遞兒.】”;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百歲以上人, 同知事加設單付. ○ 知事, 同知·僉知事加設者, 過一朔減下.”

102) 事變假注書, 假引儀, 假監役 등은 假官이지만 『속대전』 이후로는 실직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직명과 동일한 직명을 사용하였다. 가설직은 필요할 때 설치하였다가 폐지하는 경우,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고정적인 관직이 된 경우, 假官으로 차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가설직은 어떠한 관직에 가설하느냐에 따라 실관, 겸관, 가관 모두 가설이 가능하였다.

2) 權設職

권설직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직을 가리켰다. 조선전기에 권설직을 설치한 사실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권설직으로는 세조 말년에 설치한 院相을 들 수가 있다.¹⁰³⁾ 승정원에 처음 원상을 설치한 이유는 세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명나라의 사신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세조가 승정원에서 실수할 것을 우려하여 사신의 접대에 관한 일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⁴⁾ 원상은 처음에 국왕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연산군 이후로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한 뒤 일정 기간만 설치되는 권설직으로 변모하였다.

『속대전』 「吏典」 ‘權設職’에는 大君師傅, 王子師傅, 王孫教傅, 內侍教官, 童蒙教官 등을 권설직으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관직들은 大君이나 王子 등이 있으면 설치하고 없으면 폐지하는 등 상황에 따라 설치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는 관직들이었다. 이외에도 暗行·監賑·試才·按覈 등의 임무를 맡아 파견되었던 御史, 중국에 파견되었던 使臣, 국가의 제사에 차출된 獻官과 執事, 科試에 차출된 試官, 각 도에 파견되었던 敬差官, 일시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출되었던 差使員 등도 모두 권설직이었다.

권설직은 衙門의 설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설치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103) 조선전기의 院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갑주, 1973 「院相制의 成立과 機能」 『동국사학』 12; 이재호, 1980 「承政院 機能考: 特히 院相의 置廢에 對하여」 『부산대학교 논문집 29: 인문·사회과학편』; 이동희, 1993 「朝鮮初期 院相의 設置와 그 性格」 『全北史學』 16; 이동희, 1997 「朝鮮初 院相制下의 承旨」 『全北史學』 19·20; 김범, 1999 「조선전기 院相 家門의 변천과 그 의미: 勳舊勢力 파악의 한 사례연구」 『史叢』 49.

104) 위와 같음. 이재호는 최초로 원상을 설치한 시기를 세조 14년 3월로 보았고, 김갑주와 이동희는 세조 13년 9월로 보았다. 이재호, 앞의 논문, 123-126면. 김갑주, 앞의 논문, 35-36면. 이동희, 1993 위의 논문, 13-22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權設衙門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⁰⁵⁾ 대표적인 권설아문으로는 都監을 들 수가 있다. 都監은 태조가 즉위하던 해에 설치한 功臣 都監을 비롯하여 都城築造都監, 奴婢辨定都監, 封崇都監, 胎室都監, 修理都監 등 도감의 설치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권설도감에 설치된 관직은 모두 권설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설도감이 임무를 마치고 폐지되면 그 안에 설치하였던 권설직도 따라서 폐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설직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임시로 설치된 官司에 딸린 관직을 가리켰다. 대표적인 것으로 都監, 廳, 所 등의 이름을 가진 관사가 있었으며, 冊禮都監, 嘉禮都監, 尊號都監, 國葬都監, 殯殿都監, 山陵都監, 祔廟都監, 迎接都監, 實錄廳, 日記廳, 鑄錢所, 試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관사에 딸린 권설직은 해당 관사가 폐지되면 권설직도 따라서 폐지되었다. 또 하나는 관사가 설치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관직을 가리켰다. 대표적인 것으로, 院相, 御史, 使臣, 試官, 祭官, 差使員, 敬差官 등이 있었다. 이러한 권설직들은 모두 겸직이었다.

권설직은 한시적으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직을 가리켰다. 따라서 권설직은 가설직과 달리 법전에 규정된 기존 관직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별도로 職名을 정하였으며, 한시적인 임무를 마치면 직명도 자연히 폐지되었다. 권설직은 權設衙門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문은 없이 관직만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권설직은 모두 겸직이었다.

5. 맺음말

實職은 文散階와 武散階에 의거하여 부여받아 정기적으로 녹봉을 받는 본직으로, 실제의 직무를 맡아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관직이었다. 실직은 本職, 祿職, 실무직, 정규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반대의 兼職, 無祿官, 虛職

105) 한충희는 상시로 운영되는 아문인지 임시로 운영되는 아문인지에 따라 常置衙門과 臨時衙門으로 나누었다. 한충희, 2013 『朝鮮初期 官衙研究』, 국학자료원, 44-45면.

인 軍職, 임시직인 假官 등은 실직에 포함되지 않았다.

散職은 西班에만 두었던 관직으로, 대부분 겸직이었고 실무가 있는 관직이었다. 산직은 대부분 겸직이라는 점에서는 실직과 달랐고, 실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군직과 달랐다. 그러나 산직도 무산계에 의거하여 제수된다는 점에서는 정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산직은 서반 정직의 하나로, 잡직·실직·군직·허직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正職은 雜職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文散階와 武散階에 의거하여 제수되는 동반과 서반의 모든 관직을 가리켰다. 이러한 정직의 안에는 실직은 물론이고 겸직과 군직도 모두 포함되었으며, 無祿官과 假官도 포함되었다. 좁은 의미의 정직은 실직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정직의 안에는 실직과 마찬가지로 겸직과 군직 및 무록관과 가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遞兒職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관직을 일정한 기간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맡고 그 맡은 기간만 녹봉을 받던 관직으로, 관직에 제수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배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체아직은 정직 또는 실직과 별개로 설치된 관직이 아니라, 녹봉이 설정되어 있는 관직이면 그것이 실직과 군직, 정직과 잡직을 막론하고 어떤 관직이나 모두 체아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가설직은 동반과 서반의 관직 중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한 관직으로, 법전에 수록된 직명과 동일한 직명을 사용하였다. 가설직은 필요할 때 설치하였다가 폐지하는 경우, 정원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고정적인 관직이 된 경우, 假官으로 차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가설직은 어떠한 관직에 가설하느냐에 따라 실관, 겸관, 가관 모두 가설이 가능하였다.

권설직은 한시적으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직을 가리켰다. 따라서 권설직은 가설직과 달리 법전에 규정된 기존 관직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별도로 職名을 정하였으며, 한시적인 임무를 마치면 직명도 자연히 폐지되었다. 권설직은 權設衙門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문은 없이 관직만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권설직은 모두 겸직이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조선후기 東西 兩班의 관직은 文散階와 武散階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正職, 雜職階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雜職, 土官職階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土官職으로 대별할 수 있다.¹⁰⁶⁾ 그중 正職은 本職이자 祿職인 實職, 無祿職인 兼職과 無祿官, 추가로 설치한 관직인 加設職과 權設職이 모두 포함되었다. 西班의 正職에는 이들 관직 외에도 軍職과 散職도 포함되었다. 遞兒職은 녹봉을 받지 못하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마련된 관직으로, 녹봉의 재원이 마련된 관직이면 實職, 軍職, 雜職을 막론하고 모두 체아직으로 운용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체아직은 관직의 운용 측면에서 나온 개념으로, 正職과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동서 양반의 관직을 분류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東班 正職 實職(本職·祿職) 兼職(無祿職) 加設職: 實官(祿職)/假官(無祿職)/兼官(無祿職) 權設職(兼職·無祿職) 無祿官(無祿職)	西班 正職 實職(本職·祿職) 兼職(無祿職) 加設職: 實官(祿職)/假官(無祿職)/兼官(無祿職) 權設職(兼職·無祿職) 無祿官(無祿職) 軍職(虛職·祿職): 原祿遞兒/雜遞兒 散職(兼職·無祿職)
東班 雜職(遞兒職)	西班 雜職(遞兒職)
東班 土官職 咸鏡道/平安道	西班 土官職 咸鏡道/平安道

<그림 1> 조선후기 동서 양반 관직의 분류

또한 비록 논문의 대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본 연구의 결론으로 미루어볼 때

106)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준에 雜職階 및 土官職階와 구별하여 文散階와 武散階라고 나누어 부르던 것도 하나로 통합하여 正職階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층 희는 '文散階'와 '東班階', '武散階'와 '西班階'를 서로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다(위의 책, 39면 참조).

선행 연구에서 수행한 조선전기의 관직 분류도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正職과 實職의 관계가 바뀌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실직을 정직보다 상위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정직을 雜職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아 오히려 정직을 실직의 상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散職을 서반 관직의 일부로 한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산직을 職事가 없는 관직으로 보아 職事가 있는 實職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고 동반과 서반의 관직 분류에 모두 적용하였다. 셋째, 遞兒職은 관직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녹봉의 지급 방식에 따라 정직과 체아직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체아직을 관직의 운용 측면에서 나온 개념으로 보아 관직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모든 관직이 체아직으로 운용되었던 軍職과 雜職에 대해서는 체아직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다.

앞으로 위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의 법전인 『대전통편』 등에 수록된 동반과 서반의 관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분류하고 통계하는 후속 작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實職, 兼職, 軍職, 虛職, 散職, 正職, 雜職, 遞兒職, 加設職, 權設職, 祿職, 無祿職

투고일(2020. 1. 31), 심사시작일(2020. 2. 6), 심사완료일(2020. 2. 21)

<Abstract>

Categorization of Civil and Military *Yangban* Official Posts in Late Joseon

Lee, Kang-Wook *

Siljik was a regular post given based on *Munsan-gye* rank system and *Musan-gye* rank system with actual tasks receiving regular stipend. It embraced the characteristics of *bonjik*, *nokjik*, functional post, and regular post while their opposite *gyeomjik*, *murokgwan*, nominal post as *gunjik*, and temporary post *gagwan* was not included in *siljik*.

Sanjik operated only in military posts, which was mostly *gyeomjik* with actual duties. *Sanjik* differed from *siljik* in that most of them were *gyeomjik*, and differed from *gunjik* in that they had actual tasks. However, in a sense that *sanjik* was also given according to *Musan-gye* rank system, it also belonged to *jeongjik*. Therefore, *sanjik* was one of the military post's *jeongjik*, distinct from *japjik* · *siljik* · *gunjik* · *heojik*.

In a broad sense, *jeongjik* was an opposite concept to *japjik*, referring to every civil and military post given by *Munsan-gye* and *Musan-gye* rank system. This definition of *jeongjik* encompassed *gyeomjik*, *gunjik*, *murokgwan*, and *gagwan* as well as *siljik*. In a narrow sense, *jeongjik* shared the same notion with *siljik* where *gyeomjik*, *gunjik*, *murokgwan*, and *gagwan* were not included.

Cheajik was a post where several officials held one vacant position in turn and received their stipend only when they were at work. This was implemented in order to distribute limited amount of post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 candidates as much as possible. *Cheajik* was not separate from *jeongjik* or *siljik* but any posts regardless of *siljik*, *gunjik*, *jeongjik* or *japjik*, as far as it possessed official stipend, could be operated as *cheajik*.

* Advisory Committee for Historical Source Translation, Institute of the Eundae Classic Literature.

Gaseoljik was an additionally established post besides the limited number of civil and military posts. It took up the same official title stated by law. *Gaseoljik* operated in several ways: it was established when necessary and thereafter abolished; it was additionally established besides the limited number of posts and became a regular one; it was assigned to a temporary post. Depending on where it would be additionally established, it was possible for any posts including *silgwan*, *gyeomgwan*, and *gagwan*.

Gwonseoljik was a temporary post established to perform certain tasks for the time being. Unlike *gaseoljik*, therefore, it did not take up the existing title stated by law but made their own title, which would naturally disappear after the task was done. *Gwonseoljik* could either be established with the *gwonseol* public office or without it only as a post. Every *gwonseoljik* operated as a *gyeomjik*.

In sum, civil and military *yangban* posts in late Joseon largely consisted of *jeongjik* given by *Munsan-gye* and *Musan-gye* rank system, *japjik* given by *Japjik-gye* rank system, and *togwanjik* given by *Togwanjik-gye* rank system. Among them, *jeongjik* included *siljik*, a regular post with stipend; stipendless posts as *gyeomjik* and *murokgwan*; additionally established posts as *gaseoljik* and *gwonseoljik*. *Gunjik* and *sanjik* was also included in the military post's *jeongjik*. *Cheajik* was established to pay stipend to those unsalaried officials and thus any posts with enough finances, regardless of *siljik*, *gunjik*, or *japjik*, were able to be operated as *cheajik*. Since *cheajik* was an idea for the operation of posts, it could not be used as a comparative concept to *jeongjik*.

Key Words : *siljik*, *gyeomjik*, *gunjik*, *heojik*, *sanjik*, *jeongjik*, *japjik*, *cheajik*, *gaseoljik*, *gwonseoljik*, *nokjik*, *murokjik*